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·의·장

제37호      2016. 9. 2(금)

## 고시
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4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..... 1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5호 남원도시계획시설(도로,녹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..... 5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6호 주천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취락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..... 11

## 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104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..... 12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119호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고시 제 2016 - 124호

##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
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가. 고시점수: 총 52점 (지적도근점 설치)

- 지적도근점 성과고시 : 52점

나. 고시내용: 별첨

다. 성과보관장소: 지적서고

2016. 9. 2.

남 원 시 장

##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내역

일련번호	구분	기준점명 및 점번호	좌표		소재지	측량년월일	성과보관장소	비고
			지역좌표					
			X	Y				
1	도근점	11083	208563.38	219599.91	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914(913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8870.651	219673.441				
2	도근점	11084	208709.28	219887.43	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902-6(1059-5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016.563	219960.958				
3	도근점	11085	209418.30	220873.77	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1077-5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725.586	220947.281				
4	도근점	11086	209478.38	221359.59	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1084-40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785.672	221433.097				
5	도근점	11087	209518.44	221560.46	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308(454-7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825.740	221633.970				
6	도근점	11088	209490.69	221815.32	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345-5(348-2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797.992	221888.822				
7	도근점	11089	209558.00	222090.41	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59-3(65-5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865.309	221888.822				
8	도근점	11090	209711.06	222366.13	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산5-1(산5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018.366	222439.626				
9	도근점	11091	209812.46	222666.60	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산71-3(산72-13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119.775	222740.102				
10	도근점	11092	209801.00	223068.41	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148(685-3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108.321	223141.905				
11	도근점	11093	209509.62	223989.15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26(산23-2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816.953	224062.648				
12	도근점	11094	209456.91	224230.98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26(산118-2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764.243	224304.479				
13	도근점	11095	209506.74	224384.50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26(산118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09814.084	224457.988				
14	도근점	11096	209701.65	224554.85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30-4(산117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008.988	224628.342				
15	도근점	11097	209814.40	224818.23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30-4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121.744	224891.716				
16	도근점	11098	209937.32	224923.29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30-4(산117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244.663	224996.777				
17	도근점	11099	210365.40	225041.19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42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672.752	225114.661				
18	도근점	11100	210518.14	225157.51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44-2(산44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825.490	225230.978				
19	도근점	11101	210659.28	225456.46	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49-14(산108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0966.630	225529.921				
20	도근점	11102	211147.15	226065.28	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1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1454.512	226138.738				

##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내역

일련번호	구분	기준점명 및 점번호	좌 표		소재지	측량년월일	성과보관장소	비고
			지역좌표					
			X	Y				
21	도근점	11103	211337.56	226477.92	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47-2(636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1644.921	226551.974				
22	도근점	11104	211442.23	226809.45	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274-4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1749.602	226882.895				
23	도근점	11105	215416.55	237646.25	남원시 식정동 461-2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5724.070	237719.567				
24	도근점	11106	215473.32	237884.66	남원시 식정동 470-2 (470-3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5780.847	237957.983				
25	도근점	11107	215531.25	238016.20	남원시 식정동 230-10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5838.775	238089.515				
26	도근점	11108	216284.72	239310.63	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591-63(623-16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6592.260	239383.930				
27	도근점	11109	216325.14	239657.66	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626-38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6632.683	239730.959				
28	도근점	11110	216914.44	239923.45	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621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7221.985	239996.730				
29	도근점	11111	217202.89	240196.69	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1156-8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7510.443	240269.969				
30	도근점	11112	219420.71	242757.84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498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9728.288	242831.070				
31	도근점	11113	219661.10	243021.05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산163-2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19968.677	243094.276				
32	도근점	11114	219698.52	242920.36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729-6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006.097	242993.583				
33	도근점	11115	219941.23	243241.45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산152-3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248.807	243314.669				
34	도근점	11116	220243.44	243447.45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산145-5(산145-15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551.026	243520.665				
35	도근점	11117	220725.35	243821.62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69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1032.938	243894.819				
36	도근점	11118	220941.76	243986.30	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산120-1(산123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1249.349	244059.492				
37	도근점	11119	221067.71	244408.50	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56-1(산59-2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1375.299	244481.687				
38	도근점	11120	221112.68	244679.58	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69-1(산69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1420.270	244752.773				
39	도근점	11121	221239.98	244899.95	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69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1547.582	244973.138				
40	도근점	11122	221795.27	245361.84	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45-1(1145-9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2102.874	245435.019				

##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내역

일련번호	구분	기준점명 및 점번호	좌표		소재지	측량년월일	성과보관장소	비고
			지역좌표					
			X	Y				
41	도근점	11123	221947.39	245763.92	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121-3(22-3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2255.002	245837.092				
42	도근점	11124	221907.41	246060.60	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산109-6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2215.025	246133.766				
43	도근점	11125	221912.16	246323.56	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산105-1(602-1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2219.782	246396.724				
44	도근점	11126	222073.19	246838.62	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-2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2380.815	246911.786				
45	도근점	11127	220388.69	251581.54	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산83(467)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696.390	251654.708				
46	도근점	11128	220497.75	251716.07	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515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805.452	251789.236				
47	도근점	11129	220517.30	251969.38	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619-3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825.007	252042.543				
48	도근점	11130	220514.80	252466.29	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772-4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822.508	252539.454				
49	도근점	11131	220516.86	252686.25	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611-2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824.576	252759.407				
50	도근점	11132	220449.12	252607.80	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593-3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756.839	252680.966				
51	도근점	11133	220296.48	252999.57	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851-4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604.204	253072.731				
52	도근점	11134	220513.75	253019.90	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849-1	2016.06.21.	지적서고	신설
			320821.471	253093.057				

남원시 고시 제2016 - 125호

## 남원도시계획시설(도로,녹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남원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16년 9월 2일
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남원도시계획시설(도로,녹지)사업
- 나. 명 칭 :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녹지조성

### 2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의 규모

- 가. 위 치 : 남원시 노암동 603-5번지 일원
- 나. 규 모
  - 중로 2-21호선(B=15m, L=322m, A=5,050m<sup>2</sup>)
  - 중로 3-31호선(B=12m, L=320m, A=4,418m<sup>2</sup>)
  - 녹지 (연결도로 포함) 1,489m<sup>2</sup>

###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, 823호(야탑동, 시그마3 오피스텔)
- 성 명 : (주)인화에스피씨 대표이사 이\*혜
- 주 소 : 전남 순천시 고지1길 68(가곡동)
- 성 명 : 앤디디주식회사 대표이사 권\*웅

### 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로부터 ~ 2018. 3. 31

### 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: 따로붙임

### 6.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: 실음생략. 끝.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

일련번호	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				소유자		비고
					중로3-31	중로2-21		녹지	연결도로	계	주소	성명	
						도시계획선	도시계획선외						
1	노암동	603-5	전	161	161	-	-	-	-	16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2	노암동	604-1	전	67	67	-	-	-	-	67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3	노암동	625-4	전	60	60	-	-	-	-	60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4	노암동	636-11	전	78	-	68	-	-	-	68		국 (재무부)	
5	노암동	834	전	34	-	34	-	-	-	34		국 (재정경제부)	
6	노암동	834-6	전	7	-	7	-	-	-	7		국 (재정경제부)	
7	노암동	609-16	답	89	89	-	-	-	-	89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8	노암동	612-12	답	33	33	-	-	-	-	33		남원시	
9	노암동	612-16	답	13	13	-	-	-	-	13		남원시	
10	노암동	612-22	답	162	162	-	-	-	-	162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1	노암동	612-23	답	50	50	-	-	-	-	50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2	노암동	612-4	답	213	213	-	-	-	-	213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3	노암동	616-13	답	28	28	-	-	-	-	28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4	노암동	616-14	답	13	13	-	-	-	-	13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5	노암동	635-2	답	8	-	1	-	-	-	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6	노암동	636-2	답	23	-	23	-	-	-	23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
일련 번호	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		소유자		비고	
					중로 3-31	중로2-21		녹지	연 결 도로	계	주소		성명
						도시 계획선	도시 계획선 외						
17	노암동	638-5	답	132	-	132	-	-	-	132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18	노암동	638-6	답	42	-	42	-	-	-	42		국 (국토교통부)	
19	노암동	807-146	답	51	-	51	-	-	-	5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20	노암동	807-148	답	219	-	-	140	67	12	219		국 (국토교통부)	
21	노암동	807-159	답	288	-	117	97	74	-	288		국 (국토교통부)	
22	노암동	807-160	답	819	-	-	-	779	40	819		국 (국토교통부)	
23	노암동	807-161	답	427	-	-	-	373	54	427		국 (국토교통부)	
24	노암동	826-7	구	111	111	-	-	-	-	111		국 (농림축산식 품부)	
25	노암동	834-2	구	103	-	31	-	-	-	31		국 (농림축산식 품부)	
26	노암동	산56-1	임	3,430	41	-	-	-	-	4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27	노암동	603-6	대	143	143	-	-	-	-	143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28	노암동	608-4	대	1	1	-	-	-	-	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29	노암동	608-5	대	12	12	-	-	-	-	12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30	노암동	624-4	대	81	81	-	-	-	-	8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31	노암동	629-4	대	66	66	-	-	-	-	66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32	노암동	642-1	대	86	86	-	-	-	-	86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 주식회사	
33	노암동	643-3	대	65	65	-	-	-	-	65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2층(연향동)	**하우정 주식회사	
34	노암동	644-1	대	565	240	-	-	11	-	251	남원시 노암동 644	오*섭	

일련번호	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			소유자		비고	
					중로 3-31	중로 2-21		녹지	연결도로	계	주소		성명
						도시계획선	도시계획선 외						
35	노암동	645	대	400	239	-	-	79	-	318	남원시 노암동 645	박*규	
36	노암동	826-20	대	41	41	-	-	-	-	41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주식회사	
37	노암동	834-3	대	9	-	8	-	-	-	8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)	앤**주식회사	
38	노암동	597-92	도	8,521	1,154	-	-	-	-	1,154		남원시	
39	노암동	608-2	도	60	1	-	-	-	-	1		남원시	
40	노암동	612-9	도	914	666	-	-	-	-	666		남원시	
41	노암동	616-10	도	147	49	-	-	-	-	49		남원시	
42	노암동	616-2	도	314	64	-	-	-	-	64		남원시	
43	노암동	624-3	도	6	6	-	-	-	-	6	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***-3	주식회사** 주택개발	
44	노암동	625-2	도	36	25	-	-	-	-	25		남원시	
45	노암동	625-3	도	10	4	-	-	-	-	4		남원시	
46	노암동	629-2	도	7	4	-	-	-	-	4		남원시	
47	노암동	630-2	도	231	178	-	-	-	-	178		남원시	
48	노암동	635-1	도	95	-	11	-	-	-	11		남원시	
49	노암동	636-9	도	79	-	58	-	-	-	58		국 (국토교통부)	
50	노암동	643-2	도	23	3	-	-	-	-	3		남원시	
51	노암동	823-12	도	34	34	-	-	-	-	34		국 (국토교통부)	
52	노암동	823-13	도	58	6	-	-	-	-	6		국 (국토교통부)	
53	노암동	823-14	도	8	7	-	-	-	-	7		국 (국토교통부)	

일련 번호	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			소유자		비고
					중로 3-31	중로2-21		녹지	연결도로	계	주소	성명	
						도시 계획선	도시 계획선 외						
54	노암동	833	도	4,701	202	1	-	-	-	203		국 (국토교통부)	
55	노암동	636-10	잡	136	-	136	-	-	-	136	전라남도 순천시 안산길 6, *층(연향동	앤** 주식회사	
56	노암동	636-12	천	14	-	14	-	-	-	14		국 (국토교통부)	
57	노암동	636-4	천	28	-	19	-	-	-	19		국 (국토교통부)	
58	노암동	636-5	천	208	-	207	-	-	-	207		국 (국토교통부)	
59	노암동	807-1	천	142,930	-	29	-	-	-	29		국 (국토교통부)	
60	노암동	807-157	천	52	-	14	-	-	-	14		국 (국토교통부)	
61	노암동	807-58	천	5,531	-	3,663	-	-	-	3,663		국 (국토교통부)	
62	노암동	636-6	제	112	-	112	-	-	-	112		국 (국토교통부)	
63	노암동	636-7	제	35	-	-	-	-	-	35		국 (국토교통부)	
합 계				172,420	4,418	4,813	237	1,383	106	10,957			
						5,050							

일련 번호	지 번	형 태	지장물 포함규모 (도로선 내)		소 유 자		비고
			규 모	면적 (㎡)	주 소	성 명	
1	609-4답	비닐하우스	35.8m×5.5m, 2동	197.0	노암동 ***-1	오*섭	
2	612-1답	조립식건물 (스레트)	2.8~5.3m×4.4~9.6m	81.0	완주군 비봉면 눈기러기로 ***	박*철	
3	604전	조립식건물	14.5m × 7.1m	103.0	향교동 ***-1	김*주	
4	603-6대	주택 (슬래브, 스레트)	5.6m~11.6m×5.7m~9.7m 1.5m×2.7m	110.0	전남 순천시 안산길6, *층	앤*디(주)	
5	826-20대	주택 (스레트)	5.3m × 4.2m 6.1m × 9.7m	82.0	전남 순천시 안산길6, *층	앤*디(주)	
6	624-4대	주택 (슬래브)	6.5m~9.7m×10.0m~14.0m 1.5m×3.3m	131.0	전남 순천시 안산길6, *층	앤*디(주)	
7	629-4대	주택 (슬래브)	11.8m~12.2m×7.7m~11.7m	210.0	전남 순천시 안산길6, *층	앤*디(주)	
8	642대	주택 (스레트)	6.3m×13.5m	84.0	전남 순천시 안산길6, *층	앤*디(주)	
9	644-1대	주택 (스레트)	9.0m×14.3m	129.0	노암동 ***-1	오*섭	
10	645대	주택 (슬래브)	2.4m~3.8×5.6~7.8m	45.0	노암동 ***	박*규	
	합 계	10건					

남원시 고시 제2016 - 126호

주천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취락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1조에 따라 남원 주천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 구역 지정 고시(전라북도 고시 제2016-97호(2016.05.27.))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락지구(자연취락지구)로 지정·결정하고, 동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
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5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  
2016년 9월 2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자연취락지구) 결정

가. 용도지구(자연취락지구) 결정 조서

1) 취락지구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제한내용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304	주천지구	자연 취락지구	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10-3번지 일원	건폐율 60% 이하	55,483	금회	

2)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304	주천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설</li> <li>- 면적 : 55,483㎡</li> </ul>	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연취락 지구로 결정하고자 함.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취락지구)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: 실음생략

남원시 공고 제2016-1104호

###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

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일원에서 시행된 남원 월락동 양우내안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·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- 1. 사업명 : 남원 월락동 양우내안에 아파트 신축공사
- 2. 시행일 : 2016. 9. 2.
- 3. 공고기간 : 2016. 9. 2. ~ 9. 16.
- 4. 사업시행자 : (주)코람코자산신탁
- 5.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

종전토지 지적공부(폐쇄)			확정토지 지적공부(시행)			비 고
소재지	필지	면적(m <sup>2</sup> )	소재지	필지	면적(m <sup>2</sup> )	
월락동	19	18,099	월락동	1	18,190.4	지번별조서 참고

- 6. 열람 및 문의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계 (☎063-620-612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9. 2.

남 원 시 장

## 종전토지 지번별조서

남원 월락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신축공사

연번	소재지	토 지 내 역			비고
		지번	지목	면적(㎡)	
계	남원시 월락동	19필		18,099	
1	"	131-96	대	6	
2	"	157-16	대	175	
3	"	157-17	대	150	
4	"	157-21	전	813	
5	"	157-39	대	4	
6	"	157-40	대	42	
7	"	159-1	전	79	
8	"	622-83	대	118	
9	"	626-2	대	54	
10	"	산8	임	5,250	
11	"	산9	임	2,753	
12	"	산10	임	3,963	
13	"	산11	임	1,569	
14	"	산11-4	임	496	
15	"	산11-5	임	496	
16	"	산11-6	임	496	
17	"	산11-9	임	269	
18	"	산12-1	임	666	
19	"	산14-7	임	700	

### 지적확정토지 지번별조서

(남원시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비고
남원시 월락동	661	대	18,190.4	
합계	1필		18,190.4	

남원시 공고 제2016 -1119호

##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2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09월 02일

남 원 시 장

### 1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, 2015. 7. 1. 시행됨에 따라,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,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
-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, 조례의 제명을 「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에서 「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변경함.
-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관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을 명시함(안 제1조1)
-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(안 제1조~제9조, 제13조, 제17조~22조, 제26조, 제32조, 제35조~36조, 제43조, 제45조, 제48조)
- “성평등기금”을 “양성평등기금”으로 변경(제6장)

**3. 의견제출**

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다. 의견제출할 곳 : (우)55738 남원시 시청로 60

남원시 여성가족과 (전화 : 063-620-6211, FAX : 063-620-6744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

(<http://www.namwon.go.kr/>)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**4. 기 타** :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담당 조남이

(전화 : 063-620-621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  
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## 1. 제정이유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, 2015. 7. 1. 시행됨에 따라,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,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
-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, 조례의 제명을 「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에서 「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변경함.
- 나.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을 명시함(안 제1조1)
- 다.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(안 제1조~제9조, 제13조, 제17조~22조, 제26조, 제32조, 제35조~36조, 제43조, 제45조, 제48조)
- 라. “성평등기금”을 “양성평등기금”으로 변경(제6장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양성평등기본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9. 1. ~ 2016. 9. 20 .(20일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실시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명** “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”를 “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** 중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”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”으로,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, “성평등을 촉진하며,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을 촉진하며, 남원시 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**제1조의2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조의2(기본이념)**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**제2조 제1호**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성차별”이란 성별, 임신, 출산, 혼인,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, 구별, 제한, 배제,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,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

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.

5.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2조제1호에

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6. “여성단체”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은 성평등의”를 “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”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”으로,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남원시민의 권리와 의무)”를 “(시민의 권리와 의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,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취할”을 “할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, “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”를 “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성평등 정책”을 “양성평등 정책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)”을 “(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

제7조 제1항 제2호 아목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 관계기관,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”를 “경우에는 관계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관, 단체 및 개인”을 “기관·단체 및 개인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)”을 “(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,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성평등적”을 “양성평등적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경제활동 참여촉진)”을 “(경제활동 참여 촉진)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성평등 의식제고)”를 “(양성평등 의식제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강구하여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한다.

제17조 제1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여성주간행사)”를 “(양성평등 주간행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”를 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”로, “여성주간”을 “양성평등 주간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성평등의”를 “양성평등의”로, “성평등기금”을 “양성평등기금”으로 한다.

제20조 제1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제반업무”를 “모든업무”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진해야”를 “추진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”을 “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분석평가법」 제5조”를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”로, “성평등에”를 “양성평등에”로, “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”을 “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2조”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성평등위원회”를 “양성평등위원회”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평등위원회”를 “양성평등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자문을 요구한”을 “자문 하는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”를 “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남원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의원

제36조제5항 중 “위원회 사무”를 “위원회의 사무”로,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

한다.

제37조제1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기간으로”를 “임기로”로 한다.

제39조제3호 중 “질병등의”을 “질병 등의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정기회의”를 “정기회”로,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로 하는”으로,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”를 “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성평등기금”을 “양성평등기금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호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21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6조제2항 중 “협약에 의하여”를 “협약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연”을 “해당연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하여 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”을 “관하여는 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7조”를 “제35조”로 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, “성평등”을 “양성평등”으로, “담당주사”를 “담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제49조제2항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을 “해당연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기금운용상”을 “그 밖의 기금운용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얼어야”를

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50조제2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52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1. “성평등”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과 비하,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 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
2.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 “양성평등”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“성차별”이란 성별, 임신, 출산, 혼인,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, 구별, 제한, 배제,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.

5.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6. “여성단체”란 양성평등의 추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.

제4조(남원시민의 권리와 의무)

① 모든 남원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극적 조치) 시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

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양성

평등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 
-----  
-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--

-----  
-----  
----- 양성  
평등-----.

② -----  
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적극적 조치) -----  
-----

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 
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  
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 
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  
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  
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 
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  
정하여야 한다.

제2장 성평등 정책

제7조(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  
립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 
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  
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  
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  
다)을 수립·시행하며, 시행계획  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 
되어야 한다.

1.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 
추진목표
2.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 
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
가.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 
문화 확산  
나. ~ 사. (생략)  
아.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  
을 위한 사업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할 -----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  
-- 양성평등-----  
-----  
----- 목적과 기본이념  
에 맞도록 하여야 --.

제2장 양성평등 정책

제7조(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  
립) ① -----  
-----  
--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양성평등 -----  
-----
2. -----  
- 양성평등 -----  
가.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 
평등 문화 확산  
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  
아. --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

3.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 
재원 조달 방법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  
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 
계기관,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  
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, 단체  
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 
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 
등) 시장은 성평등 정책 및 여  
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의  
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  
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  
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정 참여 확대) 시장은 시  
정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  
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  
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  
립·결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  
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 ① ·  
② (생략)

제13조(성평등 의식제고) 시장은  
공공기관·가정·학교·영유아시  
설·사회교육시설·기업 등에서  
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

3. 양성평등 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경우에는  
관계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에  
게 -----.

③ ----- 기관·단체  
및 개인----- 없으  
면 -----.

제8조(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  
치 등) 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.

제9조(시정 참여 확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양성평등적 -----  
-----.

제10조(경제활동 참여 촉진) ① ·  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양성평등 의식제고) ----  
-----  
-----  
- 양성평등-----





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6조(조성기준의 설정)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.

- 1.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
- 2. ~ 5. (생략)

제4장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

제32조(성별영향분석평가) 시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에 따라 제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3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① (생략)  
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장 성평등위원회

-----  
--- 모든업무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조성기준의 설정) -----  
-----  
-----  
-- 추진하여야 --.

- 1. 양성평등 -----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

제32조(성별영향분석평가) -----  
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-----  
-----  
--- 양성평등에 -----  
-----  
-----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-----.

제33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 제32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장 양성평등위원회

제35조(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평등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4. (생략)
5. 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자문을 요구한 사항

제36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여성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 업무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실·국·소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.

1. 남원시의회 의원

제35조(설치 및 기능) -----

-----

----- 양성평등위원회 -----

-----

1. 양성평등 -----
- 
- 

2. 양성평등 -----
- 

3. 4. (현행과 같음)

5. 양성평등 -----
- 

6. -----
- 자문 하는 -----

제36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

③ --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

④ -----  
----- 특정 성별이 10분의 6  
을 넘지 않도록 -----.

1. 남원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

2. 3. (생략)

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3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사망,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에 소홀한 경우

4. (생략)

제41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

한다) 의원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의 사무-----  
-----  
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7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 
-----  
----- 한 차례만 -----  
-----.  
----- 임기로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질병 등의-----  
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회의) ① 정기회-----  
-----  
-----

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, 위원장은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(생략)

제6장 성평등기금

제4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 (생략)

제4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2.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

----- 1 이상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필요로 하는 -----  
-----  
예외로 한다.

③ ----- 과반수의  
출석으로 개의하고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장 양성평등기금

제4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-----  
-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기금의 용도) -----  
-----.

1. 양성평등-----  
-----  
-----
2. 제19조-----

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
3. (생략)

4.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

제4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

②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.

③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,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, 지출,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47조(기금의 관리·운용 심의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~ 5. (생략)

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협약하여 -----  
-----  
-----

③ ----- 해당연 -----  
-----  
-----

④ ----- 관하여  
는 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 --  
-----  
-----

제47조(기금의 관리·운용 심의) -  
-----  
----- 제35조 -----  
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기금운용공무원) 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9조(기금운용계획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(생략)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50조(기금결산) ① (생략)

제48조(기금운용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양성평등 -----  
-----  
----- 양성평등 ----- 담당  
당으로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 증빙서류-----  
-----.

제49조(기금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연도-----  
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의 기금운용에 -----  
-----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 받아야 ---.

제50조(기금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

# 시 보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받아야 -----  
--.

제52조(시행규칙) -----  
-- 필요한-----  
-----.

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성평등 조례(안)
2. 제출 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